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71호의5서식] (2022.03.18. 개정)

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외 국 법 인 연 락 사 무 소 현 황 명 세 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관리번호	처리기간 즉시

제출대상기간 년 월 일 ~ 년 월 일

1. 기본사항

①상호(법인명)		②고유번호		③국 적	
④소 재 지		⑤전화번호		⑥전자우편주소	
⑦대표자 성명		⑧주민등록번호	-	⑨휴대전화	

외국본점	⑩법인명		⑪주업종	
	⑫소재지		⑬자본금($, 기타)	

2. 임차 현황

(단위: ㎡, 원)

⑭면 적	⑮보증금	⑯월세 (부가세포함)	임대인 인적사항	
			⑰법인명(성명)	⑱사업자등록번호(주민등록번호)

3. 직원 현황

(단위: 명, 원)

직원 수			국내에서 지급한 급여		국외에서 지급한 급여		㉖가입한 납세조합
⑲계 (⑳+㉑)	⑳내국인	㉑외국인	㉒인원	㉓지급총액	㉔인원	㉕지급총액	

4. 운영자금 현황

(단위: 원)

조달내역				지출내역			
㉗계 (㉘+㉙+㉚)	㉘본사	㉙관계회사	㉚기타	㉛계 (㉜+㉝+㉞)	㉜급여	㉝임차료	㉞기타

5.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거래현황

(단위: 원)

㉟거래금액 합 계	주요 국내 거래처 현황					
	㊱상호	㊲사업자등록번호	㊳소재지	㊴거래구분	㊵주요품목	㊶거래금액
				매출[ ] 매입[ ]		
				매출[ ] 매입[ ]		
				매출[ ] 매입[ ]		

6. 본점의 국내투자 법인, 지점, 계약대리점 현황

(단위: 원, %)

㊷구분	㊸상호	㊹사업자등록번호	㊺소재지	㊻투자금액	㊼지분율	㊽업종
국내투자법인[ ] 지점[ ] 기타[ ]						
국내투자법인[ ] 지점[ ] 기타[ ]						
국내투자법인[ ] 지점[ ] 기타[ ]						

7. 계산서・세금계산서・신용카드 등 수취금액

(단위: 원)

합 계	매입 계산서		매입 세금계산서		신용카드・현금영수증 매입금액
	전자계산서	전자계산서 외	전자세금계산서	전자세금계산서 외	

8. 주요업무내용

첨부서류(해당 내용 표기)	
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☐ 전자신고 ☐ 전산매체 ☐ 서면 ☐ 해당 없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☐ 전자신고 ☐ 전산매체 ☐ 서면 ☐ 해당 없음	제출인은 「법인세법」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2에 따라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를 제출하며, **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제출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** 년 월 일 제출인: (서명 또는 인)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명세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세무대리인: (서명 또는 인) **세무서장** 귀하

세무대리인	성 명		사업자등록번호		전화번호	

첨부서류	1.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.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	수수료 없 음

작 성 방 법

※ 이 서식은 「법인세법」 제9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2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작성하며, 제출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.

1. “1. 기본사항”에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및 외국법인 본점의 현황을 적습니다.
2. ② :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54조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적습니다.
3. ⑧ :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.
4. ㉓ : 「소득세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간 근로소득(일용근로소득 포함)으로서 연락사무소가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.
5. ㉕ : 「소득세법」 제12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연간 근로소득으로서 외국법인 본점이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.
6. ㉖ : 국외근로소득(㉕)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, 가입한 납세조합명을 적습니다.
7. “4. 운영자금 현황”에는 제출대상기간 동안 연락사무소의 자금운영에 관한 내역을 적습니다.
8. “5.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거래현황”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 외국법인 본점의 전체 국내거래금액 합계 및 주요 거래처의 기본현황과 거래내역에 대하여 적습니다.
9. ㉟ : 외국법인 본점이 신고대상기간 동안 국내거래처와 거래한 연간 총 거래금액을 적습니다.
10. ㊴ : 외국법인 본점을 기준으로 매출, 매입 해당여부를 [ ]에 √표를 합니다.
11. ㊵ : 거래품목과 관련하여 재화, 기술, 용역제공 등으로 적습니다.
12. ㊷ : 다음 구분에 따라 [ ]에 √표를 합니다.
    가. 국내투자법인이란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법인을 말합니다.
    나. 지점 : 「외국환거래규정」(기획재정부고시) 제9-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점을 말합니다.
13. ㊻, ㊼ : ㊷의 구분이 국내투자법인인 경우 해당 투자금액, 지분율을 적습니다.
14. “7. 계산서・세금계산서・신용카드 등 수취금액란”
    가. 제출대상기간의 매입금액 중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,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으며,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나. "전자계산서" 및 "전자세금계산서"는 매출처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내역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15. “8. 주요업무내용”에는 연락사무소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(예: 업무연락, 시장조사, 자료수집 등)